

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부적합 통보서

1. 등록번호	
2. 제품명칭	
3. 기본 모델명	
4. 파생 모델명	
5. 보유자(기관)	
가. 성명(기관명)	
나.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다. 주소(소재지)	
6. 부적합 사유	
7. 기타	

위 제품은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, 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되어 부적합 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